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권한 시·도지사 이양 및
폐업 사실 직권말소 근거 마련 〉
■ 이기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39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권한 시·도지사 이양 및 폐업 사실 직권말소 근거 마련(안 제26조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기현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6. 23.

다.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시행령을 통해 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반면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법률 본문에서 직접 시·도사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의 이러한 위임 구조는 법률상 권한자와 실제 집행 주체가 분리되어 행정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등록취소·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등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 주체가 법률 단계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폐업 신고 불이행이 빈번하여 관련 통계가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폐업 사실을 실제로 확인

하고 있음에도 이를 행정예 연계하는 근거가 없어 통계 반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신고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법률상 직접 이양하고, 실태조사 결과 알게 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폐업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이를 확인하여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보거나 직권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 이로써 실제 업무 수행과 법적 권한을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및 제41조).

Ⅲ. 검토의견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권한 시·도지사 이양 및 폐업 사실 직권말소 근거 마련(안 제26조 등)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신고 및 행정처분 등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관계기관이 미신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폐업 사업자를 인지한 경우 이를 시·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가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674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u>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③ (생략) ④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의 준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	법률 제21674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u>-----.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도지사</u>는----- ----- ----- -----

현행	개정안
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30조(영업의 승계)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그营业을 양도하려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	----- ----- ----- -----. ⑤ <u>시·도지사</u>는----- ----- ----- -----.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영업의 승계) ① ----- ----- ----- ----- ----- -----<u>시·도지사</u>에게-----. ② ----- ----- ----- ----- ----- -----<u>시·도지사</u>에게-----. ③ <u>시·도지사</u>는----- ----- ----- -----. ④ <u>시·도지사</u>가----- ----- -----

현행	개정안
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 ⑦ (생략) 제31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은 제1항에 따른 영업 재개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 ----- ----- -----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① ----- ----- ----- ----- -----<u>시·도지사</u> <u>에게</u>-----. ② <u>시·도지사</u>는-----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도지사</u>는----- ----- ----- ----- -----. ⑤ <u>시·도지사가</u>----- ----- ----- ----- ----- -----

현행	개정안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생략) <신설> <신설>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③ · ④ (생략) 제34조(과징금 부과) ①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	-----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38조제2항에 따라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협회</u> 등은 제1항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인지하는 경우 관련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시·도지사가 제7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u>시·도지사</u>는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u>는 ----- ----- -----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과징금 부과) ① <u>시·도지사</u>는 ----- ----- -----

현행	개정안
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진흥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생략) 제36조(청문)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1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이 부과·징수한다.	----- ----- ----- -----. ② <u>시·도지사</u>는----- ----- ----- ----- ----- -----. ③ <u>시·도지사</u>는-----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청문) <u>시·도지사</u>는----- ----- -----. 제41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 또는 <u>시·도지사</u>가-----.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현행법”이라 함)¹⁾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접수 및 이에 따른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실제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관계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음.

[표]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영업의 승계)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그营业을 양도하려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1) 개정안은 시행예정법률인 「법률 제21674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개정법률은 개정안의 개정 대상인 제26조를 개정한 것임. 개정법률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개정안이 이 개정법률의 개정사항의 핵심내용을 추가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하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기준으로 서술하였음.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⑦ (생략)

제31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업 재개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영업의 재개를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3. 제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7조제5호에 대하여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3. 제16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과징금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진흥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3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10조제1항의 사전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료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한 자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분배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한 자
6. 제24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6조제2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
8.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
9.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그런데 현행법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행정처분 권한을 시행령으로 위임해 권한자와 실제 집행 주체가 분리됨으로써 행정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며,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폐업 미신고가 빈번함에도 실태조사 수행기관(現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확인한 폐업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행정 및 통계에 연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신고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등)의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

로 전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실태조사 등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공공기관·협회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를 인지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통보를 받은 시·도시사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권한과 집행의 일치를 통해 행정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처분의 주체를 법률을 통해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공공기관·협회와의 공조를 통해 미신고 폐업 업체를 면밀히 파악하여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현황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2026년 8월 24일 기준 전국에 7,919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등록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에 6,153개(77.7%), 경기도에 1,162개(14.7%), 인천광역시에 172개(2.2%)가 등록되어 수도권의 비중이 94.5%에 달하고, 특히 서울에 6,000개가 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등록되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 이양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현황

(단위: 개)

시·도	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수	시·도	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수
전 체		7,919	
서울특별시	6,513	경기도	1,162
부산광역시	82	강원특별자치도	19
대구광역시	42	충청북도	24
인천광역시	172	충청남도	3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45	전북특별자치도	22
대전광역시	59	경상북도	13
울산광역시	17	경상남도	36
세종특별자치시	11	제주특별자치도	28

※ 1) 2026. 8. 24. 기준

2)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는 개정안이 현행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 및 신고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직접 이양하려는 것으로, 실제 집행 주체와 법률상 권한 주체를 일치시키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행정의 실효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상 권한과 실제 집행체계의 일치 및 폐업 사업자 관리체계 보완에 공감하고, 관계기관을 통한 폐업 통보와 등록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연계하여 등록정보의 정확성 및 사업자 관리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